

제200회 임시회
2002. 5. 14.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

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

2002. 5. 14.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4월 27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4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2. 5. 9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동윤)

가. 제안이유

- 충북도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타 시·도 인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명예도민증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
- 행정환경변화의 현실성을 적극 반영하여 충북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에 “충청북도 소재 각급기관·단체장으로 재임한자”와 “충청북도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”을 포함하여 명예도민 대상을 확대함. (제2조)
- 현행 추천권자 시장·군수, 유관기관·단체장을 도지사로 조정하고,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장, 시장·군수, 유관기관·단체장에게 수여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. (제3조)
- 현행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 절차를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 함. (제4조)
- 명예도민증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본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·타 시도 출신인사에게 명예증서를 수여하고,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게는 공로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당초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도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하는 것으로서,

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,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- 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대상자 추천권자와 결정권자를 동일하게 “도지사”로 하는 사유와

-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면서

동 조례 제6조(대우) 제2호 새충북의 홍보책자는 발행이 중단되었는데도 정비하지 않은 사유,

동 조례 제7조(권리의무) 제1호 “도유 및 시·군유 재산과 공동시설의 무료(감면)이용 또는 우선이용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유 및 시·군 재산의 무료(감면)이용토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,

동 조례 제8조(취소)의 명예도민증서 수여의 취소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
대상자 결정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취소 시에는 삭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

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